##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97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 백승아·박홍배·강유정

진선미 • 이기헌 • 김동아

최기상 · 김남근 · 김준혁

박해철 · 오세희 · 이광희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책임 자에게 장애인의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필요한 수단을 제공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점자법」은 이에 따라 시각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사용하는 교과서는 교육부장관이 점자로 제작·보급해야 한다 고 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 교과용 점자 도서의 제작·보급과 관련된 세부 기준이부재하고, 일반 교과서와 달리 교육부가 교과용 점자 도서를 일괄적으로 제작·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작·보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그로 인해 교과용 점자 도서가 새 학년이나 학기 시작 전에 제때 제작·보급되지 않아 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교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교과용 점자 도서만으로는 다양한 장애 유형과 개별적 필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교과용 대체 자료 제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를 적시에 제작·보급하도록 하도록 하고, 교과용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 한 자에게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보급에 필요한 교과용도서의 디 지털 파일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 학생의 학습 권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

#### 법률 제 호

##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학생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의 대체자료(이하 "교과용 대체자료"라 한다)가 새 학년이나 새 학기 시작 전 등 적시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과용도서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 작·보급에 필요한 교과용도서의 디지털 파일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 제2항에 따른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보급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의 납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교과용 도서의 범위ㆍ저작	② 교육부장관은 장애인 학생
<u>• 검정 • 인정 • 발행 • 공급 • 선</u>	및 장애인 교원을 위한 교과용
정 및 가격 사정(査定) 등에 필	도서의 대체자료(이하 "교과용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대체자료"라 한다)가 새 학년
<u>한다.</u>	이나 새 학기 시작 전 등 적시
	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하
	<u>여야 한다.</u>
<u>&lt;신 설&gt;</u>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서 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과용도서를 발
	행 또는 제작한 자에게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보급에 필요
	한 교과용도서의 디지털 파일
	을 납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
	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u>다.</u>
<u>&lt;신 설&gt;</u>	④ 제1항에 따른 교과용 도서
	의 범위ㆍ저작ㆍ검정ㆍ인정ㆍ
	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
	정(査定), 제2항에 따른 교과용

대체자료의 제작·보급 및 제3 항에 따른 디지털 파일의 납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